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방안〉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39호)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51호)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60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6

I. 제안경위

[의안번호 제2205939호]

1. 제 안 자 : 김태년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1. 27.
3. 회 부 일 : 2024. 11. 28.

[의안번호 제2206851호]

1. 제 안 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23.
3. 회 부 일 : 2024. 12. 24.

[의안번호 제2206960호]

1.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26.
3. 회 부 일 : 2024. 1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번호 제2205939호]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행위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산업기술 유출 침해범죄 구성 요건을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적 입증이 어렵고,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 행위의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이 외국에서도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경우 형량과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의 반환·삭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6호의3).

나.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등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유출 행위에 포함함(안 제14조제9호 신설).

다.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15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라.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15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의안번호 제2206851호]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탈취된 첨단기술은 552건이고 피해규모는 100조원에 달하여 산업기술 유출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 등과 상관없이 벌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정하는 것은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처벌수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 유출행위 등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해를 입은 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징역형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의안번호 제2206960호]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행위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행위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아도 선고되는 형량이나 벌금이 높지 않아 유출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Ⅲ. 검토의견

1. 국가핵심기술 등의 국외유출범죄 벌칙 상향 등

3개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국외유출범죄의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이나,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은 다소 상이함.

징역형의 경우,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에 대해서는 개정안 모두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해서는 김태년·박덕흠 의원안은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고자 함.

벌금형의 경우, 김태년의원안은 현행과 같이 하되 재산상 이득액이 15억원(산업기술 유출은 2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금액으로, 이종배의원안은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으로, 박덕흠의원안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65억 이하, 산업기술 유출은 30억원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려는 것임.

아울러 김태년의원안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요건을 삭제하여 처벌가능한 행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태년의원안	이종배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 하거나 사용되 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 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단 서 신설>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이 -----사 용될 것임을 알 면서도----- ----- ----- ----- ----- -----5년----- ----- -----처하되, 15 억원 이하의 벌 금을 병과한다. <후단 삭제>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 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 이 15억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 이 상 10배 이하의 해당하는 벌금 에 처한다.	제36조(벌칙) ① - ----- ----- ----- ----- ----- -----5년----- ----- -----그 위반행 위로 얻은 이 익 또는 그 대 상기관에게 발 생한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 는----- -----.	제36조(벌칙) ① - ----- ----- ----- ----- ----- -----5년----- ----- -----65억원----- ----- -----.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 하거나 사용되 게 할 목적으로	② 산업기술이- -----사용 될 것임을 알면 서도-----	② ----- ----- ----- -----	② ----- ----- ----- -----

[illegible]

현행	김태년의원안	이중배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의 징역 또는 1 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대상기관에 게 발생한 손해 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 당하는-----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 과 같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등의 국외유출행위에 대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의 목적성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위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위법행위로 인정되더라도 기술유출로 얻은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안들은 국외로의 기술유출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요건을 삭제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을 고려하여 벌금을 부과

하는 등 국외로의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 보임.

다만, 동일 취지에서 우리위원회는 국외 기술유출행위의 처벌요건을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완화하고, 국외로의 기술유출범죄가 주로 금전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만 해외와 유사한 수준(국가핵심기술 65억원 이하, 산업기술 30억원 이하)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여, 지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12.27.)에서 의결한 바 있음¹⁾.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외로의 국가핵심기술 등의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 대상이 확대되고 강화된 벌금형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개정안의 벌칙규정 등은 법 시행 이후 상황을 고려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649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 확대(김태년의원안)

개정안은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등의 반환·삭제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위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침해행위가 성립되도록 하고(안 제14조제6호의3), 산업기술의 유출, 목적 외 사용·공개하는 행위 등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7.·8. (생략) <u><신설></u>	- 7.·8. (현행과 같음) 9.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	--

현행법 제14조는 금지되는 침해행위를 상세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고의성 또는 목적성이 있어야만 침해행위가 성립되는 한편²⁾ 산업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침해행위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음.

특히, 동 법상 비밀유지의무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대한 문서 등의 반환·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경

2)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 5. (생략)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 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우, 현행법상 비밀유지의무자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입증되어 위법행위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비밀유지의무자의 산업기술 반환 등에 대한 거부·기피 행위의 목적과 무관하게 행위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도록 하고 침해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것도 금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침해행위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12.27.)에서 동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된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25년 7월 시행될 예정이므로³⁾, 추가 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649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 등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4.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8.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 의 처
02)6788-5461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9.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10.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11. 제11조제6항·제8항 및 제11조의2제8항·제10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12.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